

믿음주는 소비자금융! 안심되는 소비자금융!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100-070)서울시 중구 소월로10, 13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TEL 02)3487-5800/ FAX 02)6670-9650/ www.clfa.or.kr

문서번호 : 기획조사-114

발신일자 : 2016. 12. 5.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감독원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16.3.22 신설, 17.3.23 시행)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7.3.23 시행예정)에 대한 회원사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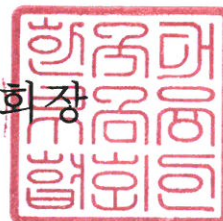
- ▶ 스마트폰 앱 개발 시 앱 설치 또는 실행과정에서 접근권한의 내용을 알려야 함.
- ▶ 스마트폰 앱 실행 시 이용자가 접근권한 허용 동의/철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 입법예고기간 : 16.11.25 ~ 17.1.4

3. 이에 붙임과 같이 금융감독원 관련 공문을 송부하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스마트폰 앱 개발 등 업무처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금융감독원 관련 공문 1부(붙임 생략, 협회 홈페이지 회원전용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 기획조사부 한성택 과장(전화 02-3487-5800, 내선 115). 끝.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수신처 : 가교에이엠씨대부 등 534개 회원사 대표이사